

2020. 7. 27.

**독일 연방대법원**

VI ZR 405/18 판결

## 판결내용 요약

### 사실관계

독일의 여러 언론매체는 복지단체 연합의 지역대표인 원고가 연합의 재정문제가 밝혀지기 직전에 병가를 내 이러한 재정문제의 원인과 해결을 위해 연합측과 원활한 소통이 되지 않고, 연합측이 원고를 지역대표에서 해임할 계획이나 원고가 소송을 통해 버티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여러 해(2011~2013년) 동안 보도 하였다. 이후 2015년 원고는 검색 엔진(구글)을 상대로 자신의 성과 이름, 특정 장소와 연관한 검색어를 입력했을 때 이러한 관련 기사로 링크되는 것을 삭제하라며 소송을 제기 하였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해당 기사는 공적인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한 사실 주장을 포함하는 적법한 보도이며, 당시의 분쟁이나 기사의 내용이 해결되지 않았고 아직 수년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원고에 대한 검색 결과가 EU의 개인정보보호규정(DS-GVO, GDPR) 제17조에 따른 원고의 권리 혹은 잊혀질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또한 법원은 즉 현대사회의 수많은 정보의 홍수 때문에 검색엔진의 도움 없이는 정보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인터넷 이용자의 정보 접근권, 접근 이익 또한 원고의 권리와 비교형량시 고려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 연방대법원 2020년 7월 27일자 판결-VI ZR 405/18

EU 정보보호기본규정(DS-GVO) 제17조

DS-GVO 제17조에 따른 인터넷 검색서비스 책임자에 대한 검색 목록 제외 청구 전제조건

연방대법원 민사 제6부는 2020년 6월 16일 자이티스 부장판사, 펜츠 및 윌러, 클라인, 알가이어 판사의 구두심리에서 다음과 같이 선고한다:

2018년 9월 6일 프랑크푸르트고등법원 민사 제16부 판결에 대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사실관계

원고는 인터넷 검색 서비스인 '구글' 색인에서 데이터 처리를 담당하는 기관인 피고에게 원고의 이름을 검색했을 때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기사로 연결되는 특정 결과 링크를 배제해달라고 요구한다.

원고는 2012년 4월까지 중부헤센 지역의 근로자 자선단체(ASB-Mittelhessen)의 지역연합 대표였다. ASB 중부헤센 지역협회는 직원 500명, 회원 3만 5000명 이상이 있으며, 건설 프로젝트와 사회기관, 요양서비스를 운영하고 후원한다. 2011년 ASB 중부헤센에서 거의 100만 유로에 가까운 재정 결함이 발견되었다. 원고는 그 직전에 건강상의 문제로 병가를 신청했다. 지역 언론은 ASB 중부헤센의 자금난에 대해 반복해서 보도했다.

2012년 3월 11일 <프랑크푸르터 노이에 프레스>는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URL Nr.1):

#### **ASB의 재정 위기: 대표는 여전히 병가중**

오늘 중부헤센 지역의 근로자 자선단체(ASB)을 위한 진실의 시간이 다가온다. ASB

주위원회는 재정적으로 타격을 입은 지역협회의 재정비안을 오늘 결정한다. (...)

2011년 11월 지역협회 내(...) 백만 유로의 재정공백이 드러났다. H. W. [원고의 전체이름]가 이끄는 협회는 재정적으로 방탕했다. 주협회는 자금 투입을 통해 원조해야 했다.(...) 조치는 더 어려워졌다. 왜냐하면 대표자 W. [원고의 성]가 재정공백이 밝혀진 시점 바로 직전부터 병가중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G.[주협회장]는 "그는 여전히 병환중"이라고 전했다. W. [원고의 성]는 오는 4월 초까지 연장될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또한 ASB는 대표와 서면 접촉만 할 수 있다. "우리는 그와 개인적인 대화라도 할 수 있기를 바랐었다"라고 주협회장은 말한다. 물론 모든 관련자가 한 테이블에 앉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제 우리에게 정보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ASB는 W. [원고의 성]를 해임할 계획이며, 그의 협력 없이 재정비를 진행할 예정이다. 언제 그가 다시 복직할 지는 "현재 불투명하다"고 G.는 설명한다.

2013년 1월 8일 <프랑크푸르터 노이에 프레세> 보도기사(URL Nr. 2):

### **협회는 전 지역 대표를 해임하려고 한다**

ASB 중부헤센의 백만 유로 손실: H.W. [원고의 전체이름]가 지역협회를 이끌었을 때 손실이 자주 불어났다.

2011년 백만 달러의 손실이 밝혀졌을 때 W. [원고의 성]는 병가중이었다. ASB는 W. [원고의 성]를 해임할 것이라고 주협회장인 G.가 말했다. W. [원고의 성]는 해임에 대해 법적으로 버티고 있다.

2011년 11월 30일 <프랑크푸르터 룬트샤우> 온라인 보도기사 (URL Nr. 3):

### **ASB 심각한 재정 적자**

(...) 중부헤센 협회장 H.W.[원고의 전체이름]는 건강상의 이유로 업무를 보지 않는다고 G.[주협회장]는 말했다. W. [원고의 성]는 오래전부터 예정되어 있던 진료를 받고 있다. 주협회는 W. [원고의 성]에 대한 논의와 소문을 부정하고 있다. G.의 자료에 의하면 재정공백은 갑자기 발견된 것이 아니다. "지역 협회는 2010년 말부터 밀접히 연루되어 있다."

G.는 "낮으로 거칠게 베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우리는 돌릴 수 있는 작은 나사가

많다." 가능한 한 모든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차별화된 해법"을 모색할 것이다. 공고화 단계로 상상할 수도 있다 (...) 하지만 더이상의 사업 확장은 이뤄지지 않는다. (...)

2012년 5월1일 <오펜바흐 포스트> 온라인 기사(URL Nr. 4):

### **구조대원들을 위한 재정비계획**

새로운 책임자와 야심찬 재정비계획으로 헤센중부 아르바이터 사마리터 연합은 직면한 재정위기에 맞설 것이다. 공표된 목표: 연간 백만 유로 절감.

Sch.[임시 대표]는 낡은 경영이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인정했다. 신임 협회장으로 서 (...) 소개되었다. 그는 오펜바흐에서 병중인 H.W.[원고의 전체이름]를 대체한다.

2012년 12월 13일 <베테라우어 차이퉁> 신문 기사(URL Nr. 5):

### **ASB는 손실을 75만 유로 줄일 수 있다**

중부헤센 ASB는 (...) 재정위기로부터 벗어날 기로에 서 있다. "우리의 손실은 이제 약 30만 유로에 불과하고, 1년 만에 약 75만 유로를 절약할 수 있었다.(...)"

약 1년 전에 ASB가 백만 유로 손실을 낸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비 감사가 실시됐다. M.[새 협회장]은 이전 협회장 H.W.[원고의 전체이름]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도 하지 않았다. 헤센중부ASB는 지난 1년 동안 재정위기에 처해 있었고, 공식적인 첫 번째 단체장 R.P.[이름]은 이유없이 사임했으며, 당시 협회장 W.[원고의 성]은 주협회 경영진에 따르면 건강상의 이유로 근무하지 않았다. 현재 협회장 M.[이름]은 경영진에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W.[원고의 성]에 대해서는 언급하려 하지 않는다. "소송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주협회 경영진은 작년 말(...) 재정비 자문단을 함께 꾸렸다. 그들은 모든 지출항목을 조사했다. 언급한대로, (...) 그것은 "각 분야별 직원 구조조정"이었다. 해고가 이루어졌지만 아주 적은 수의 직원들이었다. 오히려, 예를 들어 ASB가 관리하는 어린이집의 효율이 향상되도록 노력했다. "이제 우리는 전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 안정되었다." 예전에는 한 그룹에 15명의 아이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25명이다.(...)

2015년 5월 17일 원고는 자신의 성과 이름, 특정 장소와 연관한 검색어를 입력했을 때 나타나는 다수의 검색결과 링크를 검색 목록에서 삭제해달라고 피고에게 요구했다.

피고는 이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했지만, 여전히 논쟁중인 위 언급된 발행 기사 링크는 삭제하지 않았다(URL Nr. 1-5).

지역법원은 원고에 대한 5건의 검색결과 삭제를 요구하는 소송을 기각했다. 고등법원 항소 역시 성공하지 못했다. 항소법원이 상고를 허용함에 따라 원고는 검색 결과 삭제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

## 주문이유

### A.

항소법원의 해석(AfP 2019, 446)에 따르면 원고의 요구는 정보보호기본규정 제17조 (Art. 17 DS-GVO) 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록 DS-GVO의 적용범위는 열려있으며, 기본적으로 원고의 법적보호청구권은 DS-GVO 제17조에 해당하지만, DS-GVO 17조의 요건과 부합하지 않는다. 연결된 기사에는 원고가 병가를 냈으며 회복 과정에 있고, 오랫동안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건강상의 이유로 근무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DS-GVO 제9조 제1항에 따른 원고의 건강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은 고려할 수 있지만, 표현의 자유와 정보에 대한 권리 행사를 위해서 정보 처리가 필요하다고 (항소법원은) 판단한다. (DS-GVO 제17조 제3항 a). 한편으로 정보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원고의 권리, 다른 한편으로 피고와 검색엔진 사용자의 소통의 자유 사이에 필요한 (법익)형량을 고려하면, 정보 처리는 전반적으로 적법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연방대법원 민사부 판례(2018년 2월 27일 판결, VI ZR 489/16, BGHZ 217, 350)에 따르면 검색엔진의 검색 결과 목록에서 링크된 인터넷 사이트의 내용 때문에 당사자의 일반적인 인격권이 명백하고 단번에 확실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침해되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때만 검색엔진 운영자는 특정한 행동 의무를 이행한다는 점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법익형량은 원고에 불리하다. 왜냐하면 적어도 피고 입장에서는 명백하고 단번에 확실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권리침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사 발행 당시 보도는 적법했다. 진실한 사실 주장을 포함하고 있다. 보도된 상황은 원고의 사회적 영역에서 비롯되었고 (그 상황에) 원고의 건강상 영향이 어느정도 미쳤

는지를 밝히기에는 너무 불분명하다.

피고의 링크와 관련하여, 인터넷은 더이상 검색엔진 없이는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링크된 기사를 작성한 기자의 이익은 기본법 5조 1항에 해당한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의 잊혀질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 기사가 발행된 이후 6년-7년간의 분쟁 기간 동안 ASB 중부헤센의 재정 상황이 그간 개선되었으며 -건강해 보이는- 원고가 그곳에서 더이상 근무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각각의 정보 이익이 해결되었다는 것은 명확하지 않다. 오히려 해당 사건이 조직의 인원 감축, 사업 감축 등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을 거라는 점, 아직 수년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 판례는 현재 일어난 사건에 대한 정보뿐 아니라 과거에 발생한 사건을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정당한 대중의 이익을 인정하고 있는 점, 해당 사건은 결국 원고의 인생에서 쉽게 지울 수 없는 커리어에 속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 B.

이러한 고려는 결과적으로 상고 검토를 받아야 한다. 원고는 현재 분쟁중인 검색 결과 링크를 제외해달라고 피고에게 요구할 청구권이 없다.

## I.

DS-GVO 제17조 1항에 따른 유효한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1. 정보보호기본규정은 시기적(a), 사실적(b), 그리고 공간적(c)으로 적용할 수 있다.

a) 정보보호기본규정은 2018년 5월 25일(DS-GVO 제99조 제2항)부터 유럽연합의 모든 회원국에 직접 적용된다.

b) 인터넷에서 제3자가 업로드하고 발행한 정보를 검색하고 자동으로 분류하고 임시로 저장해 인터넷 사용자들이 특정한 순서대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검색엔진의 활동은 그 정보가 -이 사안처럼-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한 개인정보보호규정의 사실적 적용범위에 해당한다(DS-GVO 제2조 제1항). 그것(검색엔진)은 DS-GVO 제4조 제1항과 제2항에 정의된 "개인 정보 처리"를 자동화하는 것으로

분류된다. 피고는 인터넷 검색 서비스 색인에서 정보 처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DS-GVO 제4조 제7항에서 정의한 "책임자"이다(유럽사법재판소, 2019년 9월 24일 판결 참고 - Rs. C-136/17, NJW 2019, 3503, 3504 Rn. 35 및 33; 2014년 5월 13일 - Rs. C-131/12, NJW 2014, 2257, 2259 Rn. 41).

분쟁의 대상인 피고의 활동은 방송국가협약(RStV)의 제57조 제1항 제4호의 법적 용예의와 관련하여 DS-GVO 제85조에 따른 공개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언론 기사를 자동으로 목록만 작성하는 것은 독립적인 저널리즘 편집이 아니다(연방헌법재판소 참고, NJW 2020, 314, 316 ff. Rn. 36, 41, 105, 138 - 잊혀질 권리 II; Buchner/Tinnefeld in Kühling/Buchner, DS-GVO/BDSG, 2. Aufl., Art. 85 DS-GVO Rn. 12, 26; 선행규정 관련 참고 vgl. 유럽사법재판소, 2014년 5월 13일 판결 - Rs. C-131/12, NJW 2014, 2257, 2263 Rn. 85; 2018년 2월 27일 판결 - VI ZR 489/16, BGHZ 217, 350, 368 Rn. 44; DS-GVO 제85조 제1항의 논쟁적인 의미 관련해서는 추가로 Lauber-Rönsberg, AfP 2019, 373, 377 외). 피고 스스로도 그 역할을 주장하지 않는다.

c) 미국에 본사를 둔 피고는 정보보호기본규정의 공간적 적용에 있어서 DS-GVO 제3조 제1항에 따른다. 사실심의 판단에 따르면 피고는 독일 지사를 운영하며 독일 사용자에게 독일어 검색 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에 존재하는 정보를 찾아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고, 향상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결국 '결제'함으로써 자신의 정보를 제공한다. EU 회원국 영토에 있는 정보 처리 책임자의 자회사가 상업 및 광고 활동 차원에서 검색엔진을 운영하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를 수행하는 바, 제3국의 회사가 검색 엔진을 운영한다는 사정으로 정보보호기본규정에 규정하는 보증과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 (유럽사법재판소, 2019년 09월 24일 판결 - Rs. C-507/17, NJW 2019, 3499, 3500 Rn. 48 ff. i.V.m. 41; 유럽사법재판소 2014년 5월 13일 판결 참고 - Rs. C-131/12, NJW 2014, 2257, 2260 Rn. 45 ff.). DS-GVO 제3조 전제조건의 추가 제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2. 독일 법원의 국제 관할은 DS-GVO 제79조 제2항을 따른다. 피고는 독일에 지사가 있으며 (고려이유 22와 관련하여 DS-GVO 제79조 제2항 제1호), 원고는 당사자로서 독일에 거주지를 두고 있다(DS-GVO 제79조 제2항 제2호; 참고-Bergt in Kühling/Buchner, DS-GVO/BDSG, 2쇄, DS-GVO 제79조 Rn. 15 ff.;

Boehm in Simitis/Hornung/Spiecker gen. Döhmann, 개인정보보호법, 2019, DS-GVO 제79조 Rn. 17 ff.).

3.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는 검색결과를 목록에서 영구적으로 제외해달라는 원고의 법적보호 요청은 기본적으로 DS-GVO 제17조 제1항에 적용될 수 있다. 이는 원고의 요구를 기술적으로 실행함에 있어 피고가 데이터를 한번 삭제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문제의 검색어 사용 하에 그 정보가 또다시 목록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분쟁 정보를 데이터뱅크에 포함시키는 것과 같은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사정과는 관계가 없다(참고: Veil in Gierschmann/Schlender/Stentzel/Veil, DSGVO, 2018, 제17조 Rn. 89; Spindler in Spindler/Schmitz, TMG, 29. Aufl., Vorb. vor 제7항 Rn. 83). DS-GVO 제17조에 따른 '삭제'의 의미는 자율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DS-GVO 제17조 제1항에 규정된 "삭제권"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계량할 수 없고 또한 지속적으로 진보하는 기술적인 조건 때문에 단순한 데이터의 삭제에 국한되지 않으며-목적 지향적인 기사 제목에 맞게- "잊혀질 권리"로서 규범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검색엔진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요구하는 목록 제외권은 기술적 실행과는 무관하다(유럽사법재판소, 2019년 9월 24일 판결 참고 - Rs. C-507/17, NJW 2019, 3499, 3500 Rn. 45 f.; Rs. C-136/17, NJW 2019, 3503, 3506 Rn. 53 ff.).
4. 원고는 또한 피고에 의해 링크된 기사를 책임지는 언론사에 우선적으로 (삭제를) 요구할 필요가 없다. 검색엔진 운영자의 책임이나 인터넷 검색 서비스의 책임자는 (콘텐츠 제공자에) 종속적이지 않은데,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콘텐츠 제공자가 사전에 혹은 동시에 해당 정보를 삭제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면, 당사자를 위한 더 효과적이고 포괄적인 보호에 이를 수 없기 때문이다. 검색엔진 운영자의 업무는 고정된 데이터 처리 행위로서, 이에 수반되는 기본권 제한에 관해서도 독립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따라서 DS-GVO 제17조 제1항에 따른 검색엔진 운영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의 차원에서 이익형량은 링크된 웹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청구권과 다른 결과에 이를 수 있다. 왜냐하면 데이터 처리를 정당화하는 합당한 이익이 다를 수 있을뿐만 아니라 데이터 처리 결과 당사자에게, 특히 사생활에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유럽사법재판소, 2019년 9월 24일 판결 참고 - Rs. C-507/17, NJW 2019, 3499, 3500 Rn. 44 관련하여 41; Rs. C-136/17, NJW 2019, 3503, 3506 Rn.

52 관련하여 33; 2014년 5월 13일 - Rs. C-131/12, NJW 2014, 2257, 2263 Rn. 82 ff.; 연방헌법재판소, NJW 2020, 314, 324 Rn. 112 - 잊혀질 권리 II; 2018년 2월 27일 판결 - VI ZR 489/16, BGHZ 217, 350, 368 f. Rn. 45).

5. 원고는 또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미 - 당사자의 사전 이의제기 없이 검색엔진에서 생성된 내용을 사전 예방적으로 검사할 의무가 없는 (2018년 2월 27일 판결 참고 - VI ZR 489/16, BGHZ 217, 350, 361 f. Rn. 34; 연방헌법재판소, NJW 2020, 314, 324 Rn. 113 - 잊혀질 권리 II) - 피고에게 구체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검색 결과 링크, 관련하여 근거가 제시된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 그리고 공식적인 관점으로 원고의 법적인 고려를 밝힘으로써 원고의 입장에서 정보 처리의 불법성 여부를 충분히 명확하게 지적하였으며, 피고에게 검색 목록 제외를 요구하였다(소송 요건 관련해 마찬가지로 유럽사법재판소, 2019년 9월 24일 판결 참고 - Rs. C-136/17, NJW 2019, 3503, 3504 ff. Rn. 48, 66, 68, 77 관련하여 33; 2014년 5월 13일 - Rs. C-131/12, NJW 2014, 2257, 2264 Rn. 94 ff.).

6. 하지만 원고의 검색 목록 제외 청구를 위한 실질적인 전제조건은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는 피고에 분쟁중인 결과 링크를 DS-GVO 제17조 제1항에 따라 제외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다. 왜냐하면 피고가 수행한 정보 처리는 본 쟁점의 모든 중요한 상황을 기반으로, 자유로운 표현과 정보의 자유권을 행사하는데 필수적이기 때문이다(DS-GVO 제17조 제3항 a 관련하여 제6조 제1항 f., 제9조 제2항 g., 제21조 제1항 2호).

a) 원고가 검색 결과 목록 제외를 요청한 근거는 DS-GVO 제17조 제1항이다. 이에 따라 당사자는 - 해당 분쟁과 관련해 - 자신의 개인 정보가 활용된 목적이 사라졌거나, 목적과 다른 방식으로 처리되었거나, 그 정보가 더이상 필요치 않을 경우(DS-GVO 제17조 제1항 a) 혹은 당사자가 자신의 정보 처리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거나, 정보 처리를 위한 합당한 우위 근거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DS-GVO 제17조 제1항 c), 혹은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처리되었을 경우(DS-GVO 제17조 제1항 d) 청구권을 가진다.

원고는 위의 세 가지 조건 모두를 가정하여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 첫번째의 경우 피고에 의해 연결된 기사가 처음 발행된 시기인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그리고 2018년 8월 마지막 사실심이 종료된 시점 사이의 시간 경과에 관한 것이다. 두번째

항목과 관련해서는 목록 삭제를 요구하고 있는 본 소송에서 이미 피고의 데이터 처리에 대한 원고의 이의제기가 이뤄지고 있다. 세번째 항목과 관련해서 원고는 링크로 연결된 기사에 포함되어 있고, 피고에 의해 임시로 저장되어 있으며, 피고의 검색결과 리스트 증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원고의 건강 정보를 특별히 민감하게 여기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 처리는 DS-GVO 제9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 b) 여기서 위 언급된 청구 요소에 대해 내부적으로 차별화된 검토는 필요하지 않다. 정보처리가 자유로운 생각의 표현과 정보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DS-GVO 제17조 제1항은 대체로 적용되지 않는다(DS-GVO 제17조 제3항 a). 이러한 사정은 개인 정보보호권이 무제한의 절대적 권리가 아니라 정보보호기본규정의 네번째 형량 근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그것의 사회적 기능을 고려하여 다른 기본권에 대한 비례성원칙을 존중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을 나타낸다(유럽사법재판소, 2019년 9월 24일 판결 - Rs. C-136/17, NJW 2019, 3503, 3506 Rn. 57). 이러한 기본권 형량은 해당 사례의 모든 관련 상황에 기초하며, 한편으로는 당사자의 기본권 침해의 심각성을 고려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의 이익, (검색엔진) 사용자와 공공의 이익 및 검색결과 링크에서 연결되는 기사를 제공하는 언론사의 이익을 고려하여 포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유럽사법재판소, 2019년 9월 24일 판결 참고 - Rs. C-136/17, NJW 2019, 3503, 3506 ff. Rn. 59, 68 f., 77; 2019년 7월 29일 판결 - Rs. C-516/17, AfP 2019, 424, 430 ff. Rn. 57 f., 72, 81; 2019년 2월 14일 판결 - Rs. C-345/17, NJW 2019, 2451, 2455 Rn. 65 f.; EGMR, NJW 2020, 295, 296 f. Rn. 89 ff., NJW 2017, 2091, 2093 Rn. 56 f.; BVerfG, NJW 2020, 314, 322 Rn. 96 ff., 120 - 잊혀질 권리 II).

이러한 법적, 사실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형량은, 일반적으로 피고나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정보처리가 필요했는가 여부(DS-GVO 제6조 제1항 f), 혹은 중요한 공공의 이익을 이유로 특히 원고의 건강 정보 처리가 필요했는가 여부(DS-GVO 제9조 제2항 g), 혹은 피고의 정보 처리가 당사자인 원고의 이익과 권리, 자유보다 더 중요해 반드시 보호해야 하는 근거를 증명할 수 있는가 여부(DS-GVO 제21조 제1항 제2호)와는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같은 결과가 나와야 한다. 따라서 분쟁의 사정에 따라 제기되는 모든 개별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상충하는 기본권의 균등하고 중

합적인 형량이 요구된다(유럽사법재판소, 2019년 9월 24일 판결 참고 - Rs. C-136/17, NJW 2019, 3503, 3506 f. Rn. 59, 66; 2014년 5월 13일 판결 - Rs. C-131/12, NJW 2014, 2257, 2262 Rn. 76).

c)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르면 유럽연합법에서 완전히 통일된 규정은 (독일) 기본법의 기본권이 아니라 오직 유럽연합기본권에만 적용된다. 본 분쟁 대상인 목록 삭제 청구는 유럽연합 차원에서 결정한 합의된 정보보호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연방헌법재판소, NJW 2020, 314, 316 Rn. 34 - 잊혀질 권리 II; 규정 적용 범위와 다르게 정보보호기본규정은 유럽연합 회원 국가에 판단의 여지를 허용한다: 연방헌법재판소, NJW 2020, 300, 302 ff. Rn. 51, 74 - 잊혀질 권리 I). (현재) 재판부에 따라 DS-GVO 제17조 제3항 a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이하 헌장)이다(연방헌법재판소, NJW 2020, 314, 316 Rn. 42, 46 - 잊혀질 권리 II). 기본법의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유럽 헌장의 기본권은 국가와 시민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법적 (privatrechtlich) 분쟁에서도 보호된다. 독일법에서 알려진 ‘간접적인 제3자효과 (mittelbaren Drittwirkung)’의 교훈은 유럽연합법을 해석할 때는 고려되지 않는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사인 간의 관계에 있어서 유럽연합 기본권은 유사한 효과를 갖는다. 헌장의 기본권은 개별 사례와 관련해 사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연방헌법재판소, NJW 2020, 314, 322 Rn. 96 f. - 잊혀질 권리 II).

d) 원고의 입장에서 헌장 제7조 사생활과 가정 생활의 존중과 헌장 제8조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본권이 중지된다.

헌장 제7조는 사생활과 가족생활, 주거와 통신을 존중 받을 권리, 제8조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한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보장은 사생활과 가정 생활, 주거 및 통신을 존중받을 권리를 명시한 유럽인권협약(EMRK) 제8조와 상응하며, 동 협약은 특히 개인정보 처리로부터 (당사자들) 보호한다(헌장 제52조 제3항 참고). 헌장 제7조와 제8조를 보장하는 것은 서로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문제라면 이 두 기본권은 하나의 보호 구역을 형성한다. 이는 특히 검색엔진 결과 증거로부터 당사자를 보호하는 것이다(연방헌법재판소, aaO, Rn. 98 f. mwN).

헌장 제7조와 제8조는 개인정보 처리를 보호하며, ‘사생활 존중’을 요구한다. 개인정보라함은 특정한 혹은 특정할 수 있는 자연인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 또한 사생활 존중을 위한 권리는 좁게 해석되지 않으며, 개인적이거나 특히 예민한 사안

에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다. 특히 사무적이고 직업적인 활동도 여기서 제외되지 않는다(연방헌법재판소, aaO, Rn. 100 mwN).

e) 피고 검색엔진 책임자 입장에서는 현장 제16조 영업의 자유권이 증지된다(aa). 그와 달리 검색 결과 처리에 있어서 현장 제11조를 적용할 수는 없다(bb). 하지만 이러한 소송으로 인해 직접 영향을 받는 제3자의 기본권과 기사 콘텐츠 제공자들의 표현의 자유가 증지된다(cc). 또한 (인터넷) 사용자의 정보이익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dd)(연방헌법재판소, aaO, Rn. 102).

aa) 영업의 자유권은 재화와 서비스 제공을 통한 경제적 이익 추구를 보장하는 것이다. 현장 제16조에 보장된 보호는 경제활동과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자유, 계약의 자유와 자유로운 경쟁의 자유를 포괄한다. 여기에는 검색엔진 서비스 또한 포함된다. 피고인 검색엔진 책임자는 현장 제16조의 사적 보호 영역에도 속한다. 유럽연합 기본권은 기본적으로 자연인뿐 아니라 법인도 보호한다. 영업의 자유는 이미 '영업(기업)'이라는 단어에 나와있듯이, 전형적으로 법인의 형태로 조직되어 있다. 현장 제16조의 보호는 피고가 유럽연합 외에 본사를 둔 법인일 지라도 적용된다. 기본권현장의 기본권은 기본적으로 유럽연합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는 법인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연방헌법재판소, aaO, Rn. 103 f. mwN).

bb) 반면 검색엔진 책임자인 피고는 자신의 활동을 현장 제11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할 수 없다. 피고가 제공하는 검색 서비스와 피고가 검색 결과 처리를 위해 여기서 활용한 수단은 그 내용이 중립적이지는 않지만, 사용자의 의견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다고 이 서비스가 특정 의견을 확산할 목적을 가진 것은 아니다(연방헌법재판소, aaO, Rn. 105). 피고 스스로도 이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cc) 당사자와 검색엔진 책임자 사이의 형량에서 기사를 발행한 제공자(언론사)의 기본권 또한 증지된다.

(1) 당사자와 검색엔진 책임자 사이에서 검색 목록 제외 청구를 위한 분쟁에 있어서 목록 제외로 인한 제3자의 기본권 제한을 동시에 고려해 함께 결정되어야 하며, 이를 형량에 함께 검토해야 한다. 제3자에 대한 결정의 합법성은 영업

자유 제한에 대한 객관적인 합법성 요건에 속하며, 이는 헌장 제16조의 기본권 주장으로 유효할 수 있다. 이는 제3자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제3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그 어떤 것도 검색엔진 책임자에게 주어지지 않는 안 된다(연방헌법재판소, aaO, Rn. 107).

- (2) 검색엔진 책임자가 특정 검색 결과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금지해야 하는가를 다루는 분쟁에서는 콘텐츠 제공자에 대한 헌장 제11조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종종 제기된다. 여기에서 결정되지 않는 질문인, 콘텐츠 제공자가 검색엔진 운영자에게 콘텐츠 배포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지, 어느정도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현 상태는 검색엔진 책임자에게 콘텐츠 제공자가 제작한 기사를 배포할 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검색엔진 책임자의 의지에 반하여 배포를 금지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그러한 금지에서 헌장 제11조에 따른 콘텐츠 제공자의 자유가 독자적으로 제한된다. 왜냐하면 금지에 따라 (콘텐츠 제공자가)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자가 제거되고, 부분적으로 기사를 배포하기 위한 중요한 매체가 동시에 제거되기 때문이다(연방헌법재판소, aaO, Rn. 108). 콘텐츠 제공자가 책임지고 있는 분쟁중인 사이트의 특정 기사를 고려해 검색엔진 책임자에 대한 금지를 결정하는 한, 이 사이트의 영향은 검색엔진 책임자의 배치에 따라 단순히 반영되는 것이 아니다. 결정은 오히려 생각의 자유를 표현하고 사용하는 것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이 결정은 기사 내용 때문에 기사 배포를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색엔진 책임자에게 검색 결과 제공을 중단하라는 당사자의 요청은 콘텐츠 제공자가 헌장 제11조에 따라 당사자의 정보를 배포할 권한이 있는지, 어느정도 배포할 권한이 있는지를 고려하지 않고는 결정할 수 없다(연방헌법재판소, aaO, Rn. 109 mwN).

- dd) 형량에서는 인터넷 이용자의 접근 이익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헌장 제11조에 보장된 자유로운 정보에 대한 권리로서 정보 접근권에 대한 광범위한 대중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역할 또한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헌장 제11조에 따른 구체적인 인터넷 사이트로의 정보 접근을 위한 이용자들의 개별적 권리가 아니라, 형량에서 고려해야 하는 원칙으로서 정보의 자유

가 고려되며, 이는 헌장 제16조의 제한에 있어서도 고려해야 한다(유럽사법재판소, 2019년 9월 24일 판결 참고 - Rs. C-136/17, NJW 2019, 3503, 3506 ff. Rn. 59, 68 f., 77; vom 29. Juli 2019 - Rs. C-516/17, AfP 2019, 424, 430 ff. Rn. 57 f., 72, 81; EGMR, NJW 2020, 295, 296 f. Rn. 89 ff., NJW 2017, 2091, 2093 Rn. 56; 유럽사법재판소, aaO, Rn. 110 mwN).

f) 형량의 근거는 피고의 검색 서비스 방식을 정보 처리 행위 자체로 평가하며, 따라서 이에 수반되는 기본 권리 제한에 대해서도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특히 피고의 합법성 문제에 콘텐츠 제공자의 기사 발행 합법성 문제는 고려되지 않는다. 검색엔진 책임자에 대한 당사자 소송에서 관련된 권리와 이익, 부담은 콘텐츠 제공자에 대한 소송과는 다를 수 있으므로(위 B I 4 참고), 자체적인 형량 고려가 필요하다(연방헌법재판소, aaO, Rn. 112).

하지만 기본권 형량에서 서로 다른 정보처리자의 구분은 고려되지 않는데, 정보처리자 간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으며, 검색엔진 책임자에 대한 금지청구는 상황에 따라 콘텐츠 제공자에 대한 것으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연방헌법재판소, aaO, Rn. 114). 따라서 일반적으로 독일법(민법 §§ 823, 1004)에서와 같이 미디어 권한이 적용되는 콘텐츠 제공자 입장에서 기사 배포의 합법성을 평가할 때 인터넷에서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경우(2018년 12월 18일 판례 참고 - VI ZR 439/17, NJW 2019, 1881, 1883 f. Rn. 16 f., 20; 연방헌법재판소, BVerfG, NJW 2020, 300, 310 Rn. 101 ff., 114 ff. - 잊혀질 권리 I), 그러한 배포의 합법성 결정은 정기적으로 검색엔진 책임자에 대한 결정도 이끌어내야 한다. 인터넷 배포 조건(그리고 검색엔진에서 이름 관련한 노출도)과 당사자와 관련한 시간 요인을 고려해 콘텐츠 제공자가 기사를 배포할 권한이 있다면, 이와 관련해 검색 엔진 책임자가 그 사이트를 연결하는 데 다른 어떤 것도 적용할 수 없다(연방헌법재판소 NJW 2020, 314, 325 Rn. 118 - 잊혀질 권리 II).

당사자와 검색엔진 책임자 사이의 형량은, 늘 검색엔진 책임자 측에서 가능한 보호 조치에 대한 기대와 각 당사자 측에서 요구하는 보호 가능성에 대한 기대 간 긴장 관계에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서로 다른 정보처리자에 대한 형량의 결과는 다를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달라야 한다는 점은 여기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 보호의 다양한 접근 용이성 때문에 발생하는 차이나 보호 조치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차이

점 또한 고려할 수 있다(연방헌법재판소, aaO, Rn. 119).

g) 인터넷은 이제 더이상 한눈에 조망할 수 없을 정도로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때문에 검색엔진의 도움 없이는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 또한 형량에 고려되어야 한다. 결국 인터넷 사용은 종합적으로 검색엔진의 존재와 이용가능성에 달려있는 바, 검색엔진의 영업모델은 법률로 승인되었고,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다(2018년 2월 27일 판례 참고 - VI ZR 489/16, BGHZ 217, 350, 361 f. Rn. 34). 그 이면에 검색엔진의 활동은 개인정보를 국제적으로 배포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는데, 당사자 이름으로 검색하거나 해당 정보가 발행된 웹사이트를 검색하는 모든 인터넷 사용자가 검색엔진이 아니라면 발견되지 않았을 개인정보에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검색엔진 사용자가 검색 결과 목록을 통해 인터넷에서 해당 개인에 대한 정보를 구조화하여 해당 개인에 대한 어느정도의 상세 프로필을 만들 수 있게 된다(유럽사법재판소, 2019년 9월 24일 판결 - Rs. C-136/17, NJW 2019, 3503, 3504 Rn. 36). 이러한 배경에서 검색엔진 책임자의 경제적 이익의 무게는 당사자의 보호 청구권을 제한할 만큼 충분히 무겁지는 않다. 그에 비해 대중의 정보 이익과 특히 여기에 포함되는 제3자의 기본권이 더 큰 무게를 지닌다(연방헌법재판소, aaO, Rn. 120).

현재로서는 결정으로 인해 부담을 받는 기사 제공자들의 표현의 자유는 -고려되어야 할 이익뿐만 아니라 - 직접적으로 같이 영향을 받는 기본권으로서 형량에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인격권 보호의 우선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서로 대립하는 기본권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 개인이 대중 커뮤니케이션의 맥락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가 배포되는 미디어를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것처럼 검색 엔진 운영자에 대해서도 그러한 결정 권한이 없다(연방헌법재판소, aaO, Rn. 121). 다른 한편, 서로 대립하는 기본권을 공평하게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요구에서는, 검색엔진 책임자가 분명하고 한눈에 바로 인식 가능한 당사자의 권리침해를 발견할 때까지는 행동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법원은 개인정보기본규정이 발효되기 전의 판례(2018년 2월 27일 판례 - VI ZR 489/16, BGHZ 217, 350, 363 Rn. 36 i.V.m. 370 f. Rn. 52)를 고수하지 않는다.

당사자가 - 여기에서처럼 - 이름 관련 검색 허용이 아니라 그들에게 불리한 개별 기사와 관련해 그 영향에 대해 이익을 제기한다면, 그 기본권 제한에 대한 가중치는 기사 배포의 영향에 따라 상당히 좌우된다. 여기서 참고할 부분은 분쟁중인 기사 배포가 (당사자의)

자기계발에 미치는 영향들인데, 특히 이름 관련 검색 가능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검색 결과에 따른 영향들이다. 여기에서 보도 내용을 원래의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검색 엔진을 통한 정보의 쉽고 지속적인 접근성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기사의 원래 발행과 이후에 확인되는 시점 사이 시간의 중요성 또한 고려해야 한다 (연방헌법재판소, aaO, Rn. 122 mwN).

h) 이러한 원칙에 따르면 원고의 기본권은 피고의 기본권과 그 이용자, 일반 대중 및 링크된 언론 기사를 책임지는 언론 기관의 기본권보다 우선하지 않는다.

aa) 상고는 링크된 언론 기사에 표현된 사안의 진실성과 해당 보도 자체의 합법성에 대해서는 모두 고려하지 않는다. 그것의 불법행위에 대한 근거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본 소송에서 링크로 연결된 제3자 표현(기사)의 진실성이 얼마나 불분명하고, 최소한 불명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형량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어떤 결정도 필요하지 않다(2020년 7월 27일 AEUV 제 267조에 따른 제시결정 참고 - VI ZR 476/18).

(1) 피고를 통해 연결된 언론 기사는 저널리즘적으로 편집된 일간지의 보도로 독일에서 두 번째로 큰 ASB 지역협회의 경제적 어려움에 관한 것이다. ASB는 독일에서 가장 크고 잘 알려진 구호 및 복지 단체 중 하나로 특히 노인 요양, 어린이 보육, 응급 구조, 병원 이송 부문에서 서비스나 기관을 운영하고 재정을 지원한다. 관련 지역협회에만 500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협회 회원은 3만 5000명 이상이다. 기사에 보도된 지역협회의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은 협회 직원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었으며, 무엇보다 공익적으로 협회의 고객들과 요양 및 보육, 병원 서비스 이용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일간지 보도 이익의 정당성은 처음부터 의심할 여지가 없다.

(2) 정당한 보도 이익은 분쟁 상황에서 지역연합 경영진의 책임자를 언급하는데 이르렀고, 따라서 원고의 이름이 언급되었다. 원고는 당시 지역협회의 대표로서 지역협회에서 중요한 직위로 근무했으며, 적어도 이 협회의 재정적 상황에 대한 (총)책임이 있었다. 재판부는 여기서 인터넷 통신 환경, 특히 이름 검색을 통한 관련 정보의 노출 가능성이 사적 영역과 사회적 영역 사이의 영향을 거의 구별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연방헌법재판소 참고,

NJW 2020, 314, 326 Rn. 128 - 잊혀질 권리 II).

또한 당시 원고가 병가 중에 있었고, 재활치료와 병원 환경의 이유로 연락두절되었다는 점이 보도되었다는 사정으로 보도 이익의 정당성이 바뀌지는 않는다. 현재 위기 상황에 있는 지역에서 중요한 고용주이자 요양과 병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대표의 부재와 그 이유는 매우 큰 공공의 관심사이며, 그에 반해 보도된 원고의 -자세하게 설명되지 않은- 병가와 재활치료에 대한 사정은 중요성이 미미하다(공공의 관심사에 초점을 둔 사람의 건강 상황을 다룬 언론보도의 형량 접근 가능성에 관해 2016년 11월 29일 판결 참고- VI ZR 382/15, NJW 2017, 1550, 1552 Rn. 20 ff.). 결과적으로 그러한 보도는 원고가 감내해야 한다. 또한 그러한 보도는 대표의 부재가 위법행위로 인한 노동법상의 결과라는 억측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에 완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 더욱 그렇다(URL 3번 기사 참고).

bb) 피고를 통해 연결된 언론 기사는 해당 언론기관에 의해 시간적 요인을 고려해 여전히 인터넷으로 접속할 수 있고, 동시에 이름 검색으로 검색엔진에 노출된다.

(1) 공익과 기본권 제한의 중요성은 시간 경과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원래 합법적으로 발행되었던 언론 보도를 대상으로 추후에 보호 청구를 함에 있어서 시간의 경과가 얼마나 중요한가는, 당사자의 구체적인 보호요구를 파악하면서 상충되는 기본권과 관련 정보의 공익적 중요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형량을 판단할 수 있다(BVerfG, NJW 2020, 300, 311 Rn. 120 - Recht auf Vergessen I).

(a) 여기서 중대한 고려사항은 먼저 언론 보도의 대상과 보도의 영향이다. 과거의 기사가 배포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과 발전가능성이 모두 침해되는 정도가 심할수록 보호청구권은 더욱 중요해진다. 이는 동시에 언론 보도의 대상과 목적과 상호작용한다. 순전히 사적 영역에서 타인에게 보여지지 않는 행동이나 잘못을 보도한 기사와는 달리, 개인의 사회적 영역에서 이뤄진 행동에 관한 보도일 경우 보도 접근성은 장기적으로 더욱 중요해진다. 정보의 지속적 접근성에 대한 공공의 이익 또한 중요하다(연방헌법재판소, aaO, Rn. 121).

(b) 또 중요한 것은 잇따라 보도된 사건이 다른 사건들과 얼마나 관련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과거의 사건은 혼자 독립적으로 존재할 때보다 서로 연결되어 있거나, 사회정치적 혹은 상업적 활동과 연결되거나, 연속적인 사건을 통해 새로운 관련성을 부여받을 때 지속적인 의미를 유지한다.

따라서 그동안 당사자가 사건이나 개인에 대한 관심을 계속 환기시키는데 기여했는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고려할 수 있다.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어떤 사람이 대중을 찾고 관심을 불러 일으켜 원래 기사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만든 경우, 초기 보도와 대면하지 않으려는 당사자의 관심이 덜 가증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잊혀지고 싶음'에서 수반된 행동 또한 잊혀질 수 있는 기회에 속한다(연방헌재, aaO, Rn. 122 f.).

(c) 반면 기사 배포와 관련, 대중들의 의견 형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목적 달성'이라는 기준은 일반적으로 (기사의) 합당한 배포 기간을 정하는데 적절한 기준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기사들은 특정 목적을 위한 특정한 허가를 기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의사소통의 자유와 그 결과로 발생하는 권리, 즉, 소통의 목적을 스스로 설정하고, 변경하고 또는 추가적인 소통과 관련해 이를 공개할 수 있는 권리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연방헌법재판소, NJW 2020, 314, 327 Rn. 132 - 잊혀질 권리 II).

(d) 침해의 무게는 인터넷의 구체적인 환경에서 그 정보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소통되는가에 달려 있다. 오래된 과거의 사건이 개인적 블로그에서 어떤 스캔들의 형태로 보도되느냐 혹은 평가 포털에서 보도되느냐에 따라라도 차이가 있는데, 평가 포털에서는 이전 정보의 유효성이 최근에 등록된 정보에 의해 상대화되며, 또한 경우에 따라 오랜 시간이 지난 정보도 포함할 수 있다. 이 점은 당사자에게 실질적인 부담이 된다.

당사자의 부담은 인터넷에서 정보가 어떤 방식으로든 접근 가능하다는 추상적인 사실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 얼마나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달려 있다. 여기에는 검색엔진에서 그 정보가 얼마나 우선적으로 전달되는지도 중요할 수 있다. 인터넷에서 소통과 소통 조건은 확실히 개인마다 다르고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척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인터넷에서도 정보의 중요성은 소통의 맥락에서 비롯되며, 서로 다른 정보의 확산과 가시성을 가진다. 당사자의 보호 요구를 결정하는 시점에 당사자의 관점에서 전체적인 부담 영향을 평가하

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소통의 자유와 균형을 맞출 때 고려되어야 한다.

(2) 이러한 원칙에 따라 인터넷 소통 조건을 고려하여 현 시점에 언론 보도에 대한 대중의 지속적인 이익이 원고의 인격권을 능가하고 있다.

(a) 기사에 묘사된 ASB 지역협회의 경제적 어려움은 단독적인 개별 사안이 아닌 바람직하지 않은 과정으로 전개되었는데, 수년간의 재정비 노력이 들어갔으며, 개별 직원의 해고와 어린이집에 대한 양육비 대폭 상향 등 장기적인 재정 절약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당시 대표를 맡은 원고와 같은 책임자들의 역할은 일시적인 관심뿐 아니라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고 지속적인 관련성이 부여되는 중요한 자리다. 보도된 사건 이후 경과한 7년의 시간은 검색엔진에 이름 관련 검색을 포함한 낮은 수준의 정보 접근성에 대한 이익을 능가할 만큼 긴 시간이 아니다. 언론에 보도된 사건들은 지속적으로 관련성이 있을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해당 보도 취재에는 역사적으로 주목할만한 관심이 존재한다. 더욱이 원고는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만 대중에 공개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연방헌법재판소, aaO, Rn. 107; 연방헌법재판소, NJW 2020, 1793, 1794 Rn. 9).

(b) 이 점은 원고가 당시 병가로 부재중이라고 보도한 상황에 비추어도 유효하다. 원고가 병환으로 당시 재할 과정에 있었다는 비의학적인 정보는 당시 위기상황에 놓인 지역협회의 경영 대리인인 원고가 왜 그의 고용주(조직)와 연락이 닿지 않는지를 먼저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정보는 원고의 질병 종류에 대한 그 어떤 결론에도 이르지 않으며, 따라서 시간 요인을 고려한다고 해도 원고에게 중대한 추가 부담을 주지는 않는다. 그 반대로 그의 부재를 건강상의 이유로 변명함으로써 원고의 부담을 오히려 완화해주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cc) 원고의 기본권 침해는 원고와 분쟁관계에서도 크게 다른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1) 피고는 검색 요청에 따라 아무런 언급 없이 분쟁중인 언론 기사 링크를 검색 결과로 제시한다(연방헌법재판소 참고, NJW 2020, 300, 311 Rn. 124 - 잊혀질 권리 I). 분쟁 대상인 검색 결과는 항소법원에서 참조한 검색 요청에 따르면 개별 이름 검색이 아니라 지역과 이름 검색을 결합했을 때 나타나며, 이는 인터넷 사용자가 이미 존재하는 이름과 장소 결합을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마지막으로 검색 결과로 나오는 링크는 인터넷에서 발견되는 수많은

다른 자료, 일부 상위에 배치되는 정보들로 인해서 상대화된다(연방헌법재판소 참고, aaO, Rn. 125; 연방헌법재판소, NJW 2020, 1793, 1795 Rn. 16).

(2) 피고가 처리한 원고의 개인정보가 부분적으로 건강정보(DS-GVO 제9조 제1항, 제4조 15 DS-GVO)라거나 링크된 신문 기사의 최초 발행 이후 시간이 경과되었다고 해서 규칙 - 예외 - 메커니즘의 틀에서 원고의 검색 목록 제외 이익이 근본적인 우선권을 가지지는 않는다. 양 측면은 원고의 입장에서 상충되는 권리와 이익의 전체적인 형량에서 의미가 있다. 피고의 권리와 피고 입장에서 고려해야 하는 기사 제공자와 대중, 인터넷 이용자의 권리와 이익을 고려해 원고 인격권의 제도적 우선권이나 규칙예외관계를 도출할 수 없고, 게다가 포함된 건강 데이터는 완전히 비의화적인 성질이다. 위에서 설명한 분쟁 상황에 따라 언론 보도의 합법성 및 그것을 우선하는 것은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인터넷 검색서비스 색인의 정보 처리 책임자로서 피고와 비교했을때도 근본적인 우선 순위를 도출할 수 없다. 상충되는 기본권은 오히려 시작점에서는 평등하게 대립하고 있다(위 B I 6 f 와 g; 연방헌법재판소, NJW 2020, 314, 325 f. Rn. 118, 121 - 잊혀질 권리 II). 시간 경과 기준의 측면에서 그 자체로 형식적인 고려에는 관심이 없다는 점을 추가로 언급해야 하는데(연방헌재참고 NJW 2020, 300, 311 Rn. 126 - 잊혀질 권리 I), 즉 규칙 - 예외 - 메커니즘과 우선 순위 관계에서 우선 고려해야 할 전체적인 형량이 어떤 특정 시점에 바뀌는지 분명하지 않을 것이다.

7. 항고심 견해와 달리 DS-GVO 제17조의 해석을 이유로 유럽사법재판소에 사전결정(Art. 267 Abs. 3 AEUV) 요청을 구하지 않는다. 사전결정 요청은 유럽연합법의 결정적이고 통일된 해석이 필요한 문제가 제기될 때 필요하다. 본 건은 그러한 경우가 아니다. 법률적 상황은 그 사이 나온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례(2019년 9월 24일 판결 - Rs. C-136/17, NJW 2019, 3503, 3504 ff. Rn. 68, 77 i.V.m. 33; Rs. C-507/17, NJW 2019, 3499, 3500 ff. Rn. 44 ff., 67 i.V.m. 41)를 통해 충분히 설명되었다(연방헌재 참고, NJW 2020, 314, 327 f. Rn. 137 ff. - 잊혀질 권리 II).

## II.

현재 유럽연합 차원에서 최종적으로 통합된 정보보호법의 적용 우선순위와 DS-GVO 제17조에 따른 목록 제외 청구권 검토에서 이뤄지는 광범위한 기본권 형량과 관련해, 원고는 독일 국가법의 규정에 근거할 수 없다(Nolte/Werkmeister in Gola, DS-GVO, 2쇄, 제17조 Rn. 73; Herbst in Kühling/Buchner, DS-GVO/BDSG, 2쇄., 제17조 Rn. 89; Kamann/Braun in Ehmann/Selmayr, DS-GVO, 2쇄, 제17조 Rn. 75 참고).

자이터스 / 폰 펜츠/ 윌러 / 클라인 / 알가이어 (이상 재판부 판사 성)

하급심: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지역법원, 2017년 10월 26일 판결-2-3 O 190/16 -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고등법원, 2018년 9월 6일 판결-16 U 193/17 -

〈끝〉